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152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박도현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8. 2. 1. 접수 제36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B은 E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6. 12. 22. 접수 제40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E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31,43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31,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E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6. 12. 22. 접수 제40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D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20. 12. 1. 접수 제379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C은 E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6. 12. 22. 접수 제 407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는 E 및 F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원고와의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783호)를 제기하여 2016. 10.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6나2082011)은 2017. 8. 22. 'E은 F영농조합법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722,6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7. 8.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G는 F영농조합법인 및 E과 공동하여 위 244,722,682원 중 61,180,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G는 2017. 11. 10.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69,150,920원을 변제하였다.

2) 위 2017. 11. 10. 기준으로 E은 원고에게 278,112,242원(= 원본 244,722,682원 +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33,389,560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었는데, G가 변제한 위 69,150,920원을 원고의 E에 대한 위 채권 변제에 충당하면 33,389,560원이 먼저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33,389,56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인 35,761,360원이 원본 244,722,682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2017. 11. 10. 기준으로 원고가 E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는 원본 208,961,322원이 된다. 결국 원고는 E에게 '208,961,322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E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행위

1) 한편, E은 위와 같이 원고와의 제1심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6. 12. 20.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각 1/2지분씩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16. 12. 22. 접수 제40769호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은 2018. 1. 18.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계 2018. 2. 1. 접수 제3682호로 피고 C에게 이전되었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은 공매가 진행되어 피고 C이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3) 이후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2020. 12. 1. 접수 제37960호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E의 자력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외에 FRP 동력선 1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선박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19,535,000원
2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38,676,000원
3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13,498,000원
4	FRP 동력선 및 어업권	55,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E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B, C 및 전득자인 피고 C,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종중재산이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E의

책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상회복방법

1) 원물반환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1/2 지분의 경우 수익자인 피고 B 및 전득자인 피고 C 모두 자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1/2 지분의 경우는 수익자인 피고 C이 그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③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의 1/2 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인 피고 C 및 전득자인 피고 D가 각 자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

가) 가액배상의 대상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물반환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위 사해행위로 피고 B이 취득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매를 통하여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다시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처럼

사해행위로 수익자가 취득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공매 및 매매를 통해 여러 차례 이전되었다면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 중 수익자 피고 B 명의의 각 1/2 지분은 가액배상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1)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③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며, 한편 수익자·전득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받은 이익은 일치하게 되는바, 이 사안에서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2, 3항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이 일치하므로, 결국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이 가액배상액이 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억 원을 상회하나,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부동산 중 수익자 피고 B 명의의 각 1/2 지분 가액은 합계 31,432,000원이므로, E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31,432,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31,4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

별지 목록

1. 여주시 전 357㎡
2. 여주시 담 879㎡
3. 여주시 임야 397㎡. 끝.

